



대구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30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재단
피 고 [REDACTED] 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7,739,1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 대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으로, 2013. 3. 21. 피고로부터 교육용 건물인 헬기정비과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증축) 허가를 받고 이를 증축한 다음, 2013. 7.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 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13. 11. 13.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7,739,1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5.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 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산출세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법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점, 안전행정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은 이상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역시 0원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이 '산출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위 규정의 '산출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지방세기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면서 무신고가산세액이 종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로 변경되었다(제53조의2 제1항). 이에 대하여, ㉠ 안전행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산출세액의 산출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안전행 정부는 이 사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입법예고는 면제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오해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신고가산세 적용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개정 전 규정의 해석에 관한 행정청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



여 법원을 구속하는 효과가 없다), ㉔ 법제처 역시 개정이유를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량

 판사 김정기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12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법률 제12152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